

◎ **대통령령 제17432호**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52호)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기간 및 방법,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그 이행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실태의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정밀조사의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각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다.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농경지 등에 대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영 제12조제2항)

세부내용은 연합회로 문의(02)852-2291

◎ **대통령령 제17433호** ◎

지하수법시행령중개정령

◇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이유** ◇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의 고갈과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오염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를 전문으로 하는 지하수정화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2001. 1. 16. 법률 제636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하수정보체계에 지하수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자료, 지하수의 이용, 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지하수에 관계되는 기관, 단체 등이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의 굴착전에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를 탐사 및 지질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장, 군수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지하수의 취수량이 감소되거나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가정용 군사용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등 의무를 면지하여 소규모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그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그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도록 함
다. 지하수오염의 측정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일정한 수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당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제출,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추가설치 등을 명하도록 함.

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는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제출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함

사.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의 기준과 그 등록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9조의2 및 별표 7 신설)

세부내용은 연합회로 문의(02)852-2291

○ 환경부령 제 119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부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수질오염물질배출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공무원이

이들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하는 경우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사업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검사대상이 2개 분야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제7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종전에는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가 동시에 배출된 경우에는 광유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별표5).

○ 환경부 고시 제2001-197호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가격변동지수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가격변동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배출부과금 관련 2001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

2001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는 1.033으로 한다(2002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0211. 단, 2002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2031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의 가격변동지수(계수)는 환경부고시 제2000-153호(2000.12. 28)에 의한다.

○ 환경부고시제2001-196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02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2002년도 환경개선부담 부과금 산정지수는 1.466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 2001-197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2001-98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과 황함유기준이 설정된 연료의 공급 및 사용,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청정연료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료"라 함은 열의 공급·이용 등을 목적으로 연소시

키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연료용 유류"라 함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중 연료로 사용하는 중유(벵커-A유, 벵커-B유, 벵커-C유), 경유 및 저황악스유(LSWR),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정제연료유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를 말한다.

3. "저황유"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말한다.

4. "황함유기준"이라 함은 연료용유류 및 기타연료중에 포함된 황분의 중량 백분율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구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개의 단지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 냉·난방공급시설을 포함한다.)의 열을 공급받는 단지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12.1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전용면적"이라 함은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 및 부동산등기법의규정에 의한 등기부상의 "표시란(건물의 전유부분 표시)"의 면적을 말한다.

8. "보일러"라 함은 연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증기나 온수를 열을 목적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청정연료공급권"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청정연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청정연료 사용자가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0.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①삭 제

②이 고시는 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이 고시중 제6조의 규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석유비축물량을 방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저황유의 사용

제4조 삭 제

제5조 (연료용유류등의 황함유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함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및 시행시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및 시행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삭 제

③삭 제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황함유량 0.5%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기간 동안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 시설에 황함유량 1.0%이하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량 1.0%이하 중유 공급·사용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량 1.0%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 협약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은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황함유량 0.5%이하 중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기간내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협약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9조 (황함유량 분석방법) 연료용 유류중의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며, 석탄의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석탄류의 황분측정방법에 의한다.

제10조(시험분석기관) 연료중의 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지방환경관서
2.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석유품질검사소
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한국화학시험연구원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 3 장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제11조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②제1항에서 규정된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중 제1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이외의 연료사용이 인정된 화력발전소는 고체연료 사용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삭 제

제4장

제13조 (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중앙집중난방방식의 별표6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중 지역난방시설
3. 보일러의 시설용량합계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며,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4. 발전시설(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제14조(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 및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청정연료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중유를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998년 9월 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 1998.6.30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

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중유계속사용을 승인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 1998. 6. 30.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보일러내용 연수가 도래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급관 설치비용의 과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계획 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당지역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③ 삭 제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시행기 4개월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중유계속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유계속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설치일자,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도래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정연료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의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중유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보일러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부터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만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발전시설에서의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사용의무지역의 발전시설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청정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996년12월21일 이전 가동중이거나 청정연료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받은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2.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청정연료 이외의 연료를 상용토록 협의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3.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중 증설하더라도 기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부지에 증설하는 경우(단,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가동중인 발전소는 제외한다.

4. 청정연료 사용할 때(청정연료 또는 경유사용대상시설은 경유 사용할 때)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5.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순간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조정받은 경우(단, 순간에너지 사용량의 15%이내인 경우에는 조정받지 아니하고 경유 또는 저황락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의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락스유(LSWU)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6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2. 별표 6에 의한 수도권지역내에서 1998년 6월 27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중 환경부장관이 저황락스유(LSWU)를 사용토록 인정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황락스유(LSWU)나 B-C유(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를 사용토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이 고시시행일 (1996. 12. 21)이전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락스유(LSWU)를 사용

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중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사업허가를 변경하여 열공급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청정연료 배관망 설치계획 제출) 도시가스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청정연료사용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31일 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난방열 사용)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공급 계획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지역 난방 공급사업주체("한국지역난방고사장"등을 말한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된 경우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으로써 지역난방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한 시설중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난방 열공급시까지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난방공급사업자는 당해연도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①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를 설치한 자는 관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대한 봉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받는 경우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사태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봉인해제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즉시 다시 봉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되지 아니한 청정연료공급 중단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직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료의 황함유기준(제5조 관련)

구분		황함유기준
유류	중유 (벙커-A, 벙커-B, 벙커-C)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경유, 등유1호(보일러등유)	0.1% 이하
	저황왁스유(LSWU)	0.3% 이하
	부생 연료유	1호(등유형) 2호(중유형)
석탄	유연탄	0.3% 이하
	무연탄	0.5% 이하

비고 : 1. 유류 및 석탄의 황함유기준을 제6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 승인을 얻은 시설중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경우에도 위 표중 중유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제6조제1항 관련)

가. 경유(황함유기준 0.1%이하) : 전국

비고 : 경유외에 석유사업법 관계규정의 등유1호(보일러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고온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1.0% 이하 중유공급·사용지역 : 0.5% 및 0.3% 이하 중유공급·사용지역을 제외한 전국

비고 :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 이내에 상기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 한다.

(2) 0.5%이하 중유(LSWR)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	대상지역	
특별(광역시)	대전·광주	
도	경기	부천·과천·성남·광명·인양·의왕·의정부·군포·시흥·구리·하남·고양·남양주시, 광주·김포군, 오산·이천·용인시, 화성군
	강원	원주·춘천·강릉·동해·삼척시
	충북	청주·충주·제천시
	충남	서산·아산·천안시·당진군
	전북	전주·익산·군산시
	전남	여수·광양·나주·목포시
	경북	경산·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창원·마산·진해·진주·김해·양산시
	제주	전지역

비고 :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 이내에 상기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 한다.

(3) 0.3%이하 중유(LSWR포함)공급·사용지역

시·도	대상지역별 시행시기		
	2001. 7. 1부터	2001. 7. 1부터	2001. 7. 1부터
특별(광역시)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	광주·대전	-
도	경기	수원·안산시	군포·오산시
	강원	-	강릉시
	충북	-	청주시
	충남	-	-
	전북	-	전주·군산시
	전남	-	여수시(구 여천시)
			여수시(구 여수시)
	경북	-	구미시
	경남	-	창원·마산시
			김해시

비고 : 1.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 이내에 상기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 한다.

2. 0.3% 이하 중유(LSWR 포함)외에 석유사업법 관계규정의 부생연료유2호(중유형)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

에 대한 공급 및 사용지역은 “나.중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삭제

[별표 4] 삭제

[별표 5]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사용 (제14조 제1항 관련)

대상 지역		보일러용량의 합	사용 연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2톤이상 ·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	· 2톤이상 ·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구권	대구광역시	· 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구미·포항시	· 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양·여수시 (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북권	전주·군산·익산시	· 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전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할지역	· 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비고 : 대상시설의 범위에 비상용 발전기를 포함한다.

[별표 6]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제 14조제1항 관련)

대상 지역		구분	보일러용량의 합	사용 연료
수도권	서울특별시	-	· 25평이상 · 25평미만 12.1초과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인천광역시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	기존	· 25평이상 · 25평미만 18평초과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25평이상(아파트는 '91.1.1. 연립주택은 '91.4.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25평미만 14평이상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상 지역		구분	보일러용량의 합	사용 연료
수도권	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		(아파트는 '91.1.1이후, 연립주택은 '91.4.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14평미만 12.1평초과 ('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평택·오산·용인시	기존	· 18평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부산권	부산광역시	기존	· 18평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12.1평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양산·진해·마산·창원·김해시·울산광역시	기존	· 18평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12.1평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시는 '98.7.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구권	대구광역시	기존	· 18평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12.1평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구미·포항시	기존	· 18평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12.1평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양·여수시 (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기존	· 18평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12.1평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북권	전주·군산·익산시	기존	· 18평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12.1평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전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할지역	기존	· 18평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12.1평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1-25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12월29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별표 2001-3-192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2,2,2-Trifluoroethyl 2-propenoate”를 “2,2,2-Trifluoroethyl 2-methyl-2-propenoate”로 하고, 2001-3-1951란 다음에 2001-3-1952 내지 2001-3-197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01-3-1952 [총칭명] 1-Substituted triazinylamino-7-carboxylated phenylazo-hydroxynaphthalenedisulfonic acid, mixed salts
- 2001-3-1953 (3-Chloropropyl)triethoxysilane [CAS No. 5089-70-3]
- 2001-3-1954 2-(4-((Hexahydro-2,4,6-trioxo-5-pyrimidyl)azophenyl)-6-methylbenzothiazole-7-sulfonic acid compound with 2,2',2''-nitrotris(ethanol (1:1) [CAS No. 65036-46-6])
- 2001-3-1955 1,4-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3-(dodecenyldihydro-2,5-furandione, formaldehyde, 2,2'-((1-methylethylidene)bis(4,1-phenyleneoxy))bis(ethanol), a,a'-((1-methylethylidene)di-4,1-phenylene)bis(w)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 methyloxirane and phenol [CAS No. 202420-33-5]
- 2001-3-1956 sec-Hexadecyl-naphthalene [CAS No. 94247-63-9]
- 2001-3-1957 Naphthalene reaction products with tetradecene [CAS No. 132983-41-6]
- 2001-3-1958 [총칭명] Olefin copolymer
- 2001-3-1959 [총칭명] Alkenyl carboxylate, potassium salt
- 2001-3-1960 Dilithium azelate [CAS No. 38900-29-7]
- 2001-3-1961 2,5-Dihydro-3,6-bis(4-(octadecylthio)phenyl)-phenyl-pyrrolo[3,4-clpyrrole-1,4-dione [CAS No. 247089-62-9]

- 2001-3-1962 α-(Tridecafluoroethyl)-ω-hydroxypoly(oxy-1,2-ethanediy) [CAS No. 56467-05-1]
- 2001-3-1963 [총칭명] Fluoroalkyl acrylate copolymer
- 2001-3-1964 Silsesquioxanes, 3-aminopropyl Me. ethoxy-terminated [CAS No. 128446-60-6]
- 2001-3-1965 3,5-Diamino-2-((2-sulfo-4-((4-sulfophenyl)azo)phenyl)azo)benzoic acid sodium salt reaction products with diazotized mono(2-((4-aminophenyl)sulfonyl)ethyl)sulfate [CAS No. 298214-91-2]
- 2001-3-1966 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esters with trimethylolpropane [CAS No. 85186-89-6]
- 2001-3-1967 2-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butyl 2-methyl-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CAS No. 120363-55-5]
- 2001-3-1968 M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 acetate, ethyl 2-propenoate and 2-propenoic acid [CAS No. 31276-64-9]
- 2001-3-1969 3-(Silylpropyl)urea, Si-(ethoxy and methoxy) derivs. [CAS No. 116912-64-2]
- 2001-3-1970 1,4-Cyclohexanedimethanol polymer with dimethyl cyclohexane-1,4-dicarboxylate [CAS No. 280129-75-1]
- 2001-3-1971 Mixture of 1-(1,2,3,4,5,6,7,8-octahydro-1,2,8,8-tetramethyl-2-naphthyl) ethan-1-one and 1-(1,2,3,4,5,6,7,8-octahydro-2,3,8,8-tetramethyl-2-naphthyl)ethan-1-one
- 2001-3-1972 2-(4-Ethoxyphenyl)-2-methyl-1-propanol [CAS No. 83493-63-4]
- 2001-3-1973 [총칭명] Octadecene-polyisobutene-(tetradecyl-/behenyl) maleate copolymer
- 2001-3-1974 Dimethyl 3,3'-dithiobispropionate [CAS No. 15441-06-2]
- 2001-3-1975 Ethenyl silanetriol polymer with ethenol [CAS No. 155071-88-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01-198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거제시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1. 사업목적

장승포(옥포)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인 옥포만, 장승포만의 연안해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17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아양동 산28번지 일원

○부지면적 : 31.458m²(중계펌프장부지 포함)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명칭 : 거제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 : 24,000톤/일

○처리방법 : DNR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예정시행기간 : 2,299.7ha

○예정처리구역 : 647.2ha

마. 사업시행기간 : 2002년~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 별항

사. 기타 관계서류는 거제시 수도과(055·639-353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01-201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관할사업장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4호, '00.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관할사업장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시험"이라 함은 사업장의 자료수집장치 또는 중간자료수집장치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굴뚝감시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라 함은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라 한다)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대정확도 시험과 확인검사를 말한다.

가. "상대정확도시험"이라 함은 자동측정기에서 생산되는 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부록1 및 부록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확인검사"라 함은 자동측정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원격검색"이라 함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물질을 측정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3조의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이하 “관제센터” 한다)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명칭	설치위치	관할구역
수도권 관제센터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부권 관제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호남권 관제센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영남권 관제센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제센터의 관할 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법 제15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 기기등의 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시기」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뚝감시체제의 관리를 위한 시험 등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통합시험
 - 나. 각 사업장의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등의 원격제어
 - 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도확인시험
 - 라. 각 사업장의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의 정상운명을 위한 기술지원
2. 측정자료에 대한 다음 각목의 업무 및 생산된 자료의 관할 행정기관 제공 업무
 - 가.배출허용기준초과 자료내역
 - 나.측정자료의 전송상태, 측정기기의 상태표시 내용 등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다.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양과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측정자료의 적정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전송된 자료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 및 관리하는 업무
 - 나. 측정자료의 사용가능 상태로의 확정하는 업무
4.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관제센터의 시스템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 측정기기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원격제어기능
 - 가. 원격검색(Remote-Check)
 - 나. 시간교정(Time-Set)
 - 다. 재조정(Reset)
 - 라. 상수검색(Contant-Check)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 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 나. 측정기별 교정이력에 대한 기록, 저장
 - 다. 자료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 라. 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 마. 통신상태의 이상유무확인
 - 사.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

3. 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목의 기능

- 가. 측정자료는 5분 평균자료 및 30분 평균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3년 이상 저장
- 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료의 사업장별, 굴뚝별 초과오염물질·초과농도·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5년 이상 저장

4. 굴뚝감시체제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 가. 사업장별 배출시설현황
- 나. 굴뚝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 다. 굴뚝별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
- 라. 부착된 측정기기별 특성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마. 굴뚝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경보를 사업장관리자 및 관할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유·무선전화 및 모사전송 이용)

- 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 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시스템의 장애방지기능

: 사업장에서 전송된 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제6조(통합시험 및 자료의 확정 등) ① 권역별관제센터는 사업장에서 측정기나 자료수집장치·중간자료수집장치를 신규 또는 교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통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권역별관제센터는 측정기의 성능 및 운영 실태 또는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별표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원격검색, 시간교정, 재조정 및 상수검색 등의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권역별관제센터는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기 오동작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측정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상대정확도시험 및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권역별관제센터는 각 측정기에서 측정되어 전송되는 30분 평균자료(이하 "30분자료"라 한다)중 실제 값으로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하 "무효자료"라 한다)를(별표2)의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를 개선하는 경우는 관할행정기관에서 통보하는 문서로 무효화 처리한다
2. 정도검사 불합격 측정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통보하는 정도검사 성적서로 무효화 처리한다
3. 관제센터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자료 또는 사업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비정상측정자료 등은 기술검토심의회에서 판정한 결과에 따른다.
4.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측정시스템 점검·시험시의 측정자료는 실시 전에 문서로 관제센터에 통보한 경우에만 무효자료로 처리하고 관제센터에서 실시하는 측정기기 시험은 근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무효자료로 처리한다. 다만, 상태표시가 부착된 자료는 모두 무효자료로 처리한다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① 권역별관제센터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의 점검 또는 측정기의 일시 이상 등으로 무효자료가 발생하거나 관제센터에 자료가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통계분석이나 총량계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효자료에 대신할 대체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자료는 무효자료의 생성 또는 자료가 전송되지 아니한 기간이 발생하기 전의 유효자료 중(별표3)의 대체자료생성기준에 따라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검토심의위원회 및 기술검토자문위원회의 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측정자료의 신뢰를 확보하고 비정상적으로 측정된 자료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자료의 공정한 판정을 위한 기술검토심의회를 권역별관제센터에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굴뚝감시시스템에 대한 수탁업무의 기본정책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기술검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기술검토심의위원회 및 기술검토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측정 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환경부고시제2000-14호(2000.1.25)호는 폐지한다.

[별표1] 원격검색 실시방법

[별표2] 무효자료 선별기준

[별표3] 대체자료 생성기준은 연합회로 문의

○ 환경부 고시 제 2001 - 202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토양환경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1. 12. 27

환경부장관

토양 환경 평가 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토양환경평가에 적용한다. 토양환경평가는 본 지침을 따르되 대상부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1. 항 목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하 ‘토양오염물질’이라 한다)에 의하여 야기된 토양오염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및 절차는 1단계(기초조사)와 2단계(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1단계 (기초조사)

대상부지의 토양환경과 관련된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한다.

(1) 자료조사

대상부지의 토양환경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다만, 기본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조사한다.

(가) 기본자료

- 1)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 2) 대상부지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등
- 3) 시설운영 개요 및 관련 자료(도로, 구조물, 냉난방시설, 하수시설, 상수시설 등)
- 4) 대상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 감정서 등

(나) 기타 자료

-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서
- 2)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자료
- 3)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항공사진
- 4)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조감도
- 5)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검사자료
- 6)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
- 7) 부지의 굴토 및 복토 등에 관한 자료
- 8) 오·폐수 및 우수 흐름도
- 9) 생산공정도 및 유독물 관련자료
- 10) 기타 토양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방문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부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의 보관상태

(나)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식물 성장상태,

토양오염유발시설 등

(다) 오염 예상지역의 누출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청취조사

대상부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및 주변지역 거주자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청취조사 대상자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자를 선정한다.

(가) 대상부지의 주요 시설현황 및 폐쇄 또는 이전 사항

(나) 오염물질 관리상태

(다)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한 오염사고 사례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평가 의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한다.

자료조사·현장조사·청취조사 이외에 필요하다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1단계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별표 1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평가의견 등을 개관화할 수 있는 자료(예: 참고문헌, 증거서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자료조사, 방문조사 및 청취조사를 수행한 책임자와 토양환경평가기관 장의 서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나. 2단계 (정밀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오염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등)

를 분석·평가하여 토양오염도를 최종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대상부지내의 지하수 오염도도 조사·분석할 수 있다.

(1) 조사계획 수립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1단계 보고서 및 기존 자료의 검토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잠재적인 오염물질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 보고서 및 기존 자료를 검토한다.

(나) 시료채취계획 수립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및 시료의 운반·보관 등 시료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 시료채취

대상부지에 대한 오염물질의 정량적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한다. 토양시료 채취방법은 별지 1과 같다.

2)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시료는 4℃ 이하의 냉암상태로 보관·운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신속하게 분석한다.

(다) 안전위생에 대한 계획 수립

조사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라) 시료분석계획 수립

채취된 시료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 오염도 분석

토양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또한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적 또는 외국의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2) 기 타

그 밖에 정확한 토양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마) 정도관리(QA/QC) 계획 수립

분석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시료채취방법, 채취장비 및 측정분석장비의 관리 및 기기보정, 시료·바탕 시료 및 표준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사활동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사전조사, 시료채취, 시료운반·보관, 시료분석 및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3) 평 가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에 대한 평가는 1) 법상의 토양오염물질인 경우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하고 2) 그 외의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적 또는 외국 기준에 준하여 평가하고, 이 경우의 분석방법은 당해 기준적용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조사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토양오염이 대상부지에서 기인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조사계획에서의 가정과 조사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수행할 수 있다.

(4) 조사결과 해석

(가) 조사결과 확인

시료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로 대상부지에서 폐기 또는 누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밖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나) 조사결과 해석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 평가를 요구할 때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5) 최종보고서 작성

토양평가기관은 별표 2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최종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본요건

최종보고서는 과학적인 구성요소·학술적인 서술·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고서

1) 요약문

관련사진, 시추기록표(boring log), 실험데이터, 이전의 토양환경평가 보고서 등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기 타

추가적인 상세 평가의견, 추가평가를 위한 권고사항, 복원 기술 및 복원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동의하면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단계 평가보고서, 별표 2 최종평가보고서는 연합회로 문의바람

○ 환경부고시제2001-208호 ○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정정

관보 제14956호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2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부분 :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2001.11.20)중 “3. 산정방법” 다목 (5)에 대한 단서 추가

○오류사항 : (5)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 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정사항 : (5)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 환경부공고 제2001-158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 설치시 신기술을 우선 사용하게 하며, 범정부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과 환경산업체 육성발전 등을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국내 연구기관 등만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9호)

나. 환경신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이 동 평가기술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내지 제6항)

다.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라.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5항)

마.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신청업체의 편의도모 등을 위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함(안 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바.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에 대해 외국과 상호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및 심사원 교육기관의 업무규정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 27조의2 및 제30조의2)

사.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만 위임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민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 함(안 제35조제2항)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504-9241, FAX : 02- 507-6114, 전자우편: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고시 제2002- 1호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방지시설 종류 및

오염토양정화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 정화시 필요한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정화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정화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방법의 경우에는 당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양오염방지시설(제2조관련), 별표 2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제3조제1항관련) 등은 연합회로 문의.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1-26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4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 별표의 2001-3-1975란 다음에 2001-3-1976 내지 2001-3-20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1-3-1976	4,4,14,14-Tetraethoxy-3,15-dioxa-8,9,10-trithia-4,14-disila heptadecane [CAS No. 56706-11-7]
2001-3-1977	Bis[3-(triethoxysilyl)propyl] polysulfides [CAS No. 211519-85-6]
2001-3-1978	Butyl 2-propenoate polymer with 2-hydroxyethyl 2-propenoate [CAS No. 32409-50-0]
2001-3-1979	1,1',1''-Nitrilotripropan-2-ol acetate [CAS No. 148691-66-1]
2001-3-1980	Tris(2-hydroxyethyl)ammonium acetate [CAS No. 14806-72-5]
2001-3-1981	N,N,N-Trimethyl-3-((2-methyl-1-oxo-2-propenyl)amino)-1-propanaminium chloride polymer with ethenol and ethenyl acetate [CAS No. 107547-63-7]
2001-3-1982	4-({5-(Anilino)carbonyl-2-methoxyphenyl}azo)-3-hydroxynaphthalene-2-carboxamide [CAS No. 56396-10-2]
2001-3-1983	1,2,3,4,4a,4b,5,6,10,10a-Decahydro-1,4a-dimethyl-7-(1-methylethyl)-1-phenanthrene carboxylic acid, calcium salt [CAS No. 13463-98-4]
2001-3-1984	{29H, 31H-Phthalocyaninato(2-)-N29, N30, N31, N32}-copper, {[3-(dimethylamino)propyl]amino}sulfonyl derives., acetate [CAS No. 90295-19-5]

2001-3-1985	Sodium bis(4-hydroxy-3-((2-hydroxy-1-naphthyl)azo) benzenesulphonamidato(2-))cobaltate(1-) [CAS No. 58302-43-5]
2001-3-1986	Tricyclodecanedimethanol [CAS No. 26896-48-0]
2001-3-1987	[총칭명] xSodium amino hydroxy disulfonate substitutednaphthalene (sulfonatoxyalkylsulfonyl) or (alkenylsulfonyl) phenylazo, (sulfonatoxyalkyl sulfonyl) or (alkenylsulfonyl) sulfonato substituted phenylazo
2001-3-1988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C12-18-alkyl[(ethylphenyl) methyl]dimethyl, chlorides [CAS No. 68956-79-6]
2001-3-1989	[총칭명] Dipotassium hydrogen/sodium carboxylato sulfonato phenyl- difluoroa minopyrimidin-oxidosulfonatophenyl-phenylformazan cuprate
2001-3-1990	[총칭명] Polyalkylated siloxane reaction products with polyalkylene ether polymer with cyclohexane and polymeric alkane isocyanate derivative, hydrazine and acrylate
2001-3-1991	Triisononyl benzene-1,2,4-tricarboxylate [CAS No. 53894-23-8]
2001-3-1992	Refractory ceramic fibers [CAS No. 142844-00-6]
2001-3-1993	[총칭명] Acetamide, methoxy, benzothiazolyl with carbomonocycle
2001-3-1994	[총칭명] Alkyl methacrylate alkyl acrylate copolymer
2001-3-1995	2-Ethylhex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2-methylpropyl 2-methyl-2-propenoate and 3,3,5-trimethylcyclohexyl 2-methyl-2-propenoate [CAS No. 163149-30-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